

쿠르드족이란

최 근 국제정치의 초점이 된 이라크 쿠르드족문제는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민족자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20년에 체결된 세브르조약은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쿠르드족 거주지역은 터키, 이란, 이라크, 옛소련 국가들에 의해 분할돼 있다. 이들중 어느 한나라도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에 2천만명이나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이다. 기원전에는 티그리스강 상류 평원지대에 메디아왕국을 건설했고 한때는 사라센문명의 개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거주지역인 쿠르디스탄이 지난 1923년 강대국의 영토구획에 따라 분할되면서 소수민족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쿠르드족은 인종 언어가 이란에 가까우며 종교는 이슬람교 순니파를 신앙하고 있다. 남자는 긴 터반을 두르고, 여자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 등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아르메니아에 걸친 산악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라크내에는 약 3백5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쿠르드족이 민족운동을 벌인 최근 반세기동안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르자니로 이라크에서 1946년에 결성된 쿠르드민주당(KDP)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KDP의 리더였던 타리바니는 바르자니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하고 쿠르드애국연맹(PUK)을 결성,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1961년에 쿠르드민주당이 반정부활동을 시작하자 이라크정부는 타리바니가 이끄는 쿠르드애국연맹을 지원함으로써 쿠르드족의 내부대립을 부추기는 교란작전을 구사했다. 한편 이란의 팔레비국왕은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 쿠르드민주당을 지원했다. 이로써 쿠르드민주당과 이란, 쿠르드애국연맹과 이라크간의 대립관계가 성립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쿠르드민주당은 쿠르드애국연맹과 화해하고, 1991년 걸프전쟁에서 후세인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연맹은 손을 잡고 후세인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한때는 슬레이마니아, 키르쿠크등에 해방구를 세우기도 했으나 전열을 정비한 이라크군의 반격을 받아 철수하고 말았다.

미국과 유럽 열강은 쿠르드족의 안전확보를 위해 북위 36도 이북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합동군을 투입했다. 유엔의 보호하에 쿠르드족은 자치상태를 유지했다. 1992년 5월에는 최초의 의회선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양당은 자치정부의 각료포스트를 균등배분하는등 협조관계를 유지하다가 민족주의운동의 노선차이로 충돌, 1994년 6월에 전투가 격화되었다. 미국의 주도로 1995년 8월에 휴전에 합의했다.

양당은 그후에도 전투재개와 휴전을 반복하다가 지

난 8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전투가 격화되었다. 8월 하순에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고 30일부터 이틀간 런던 미대사관에서 화평조건에 관한 교섭을 가졌다. 쿠르드민주당 요청에 의한 이라크정부의 군사개입은 미국에 의한 중재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로 미국의 제재 조치를 불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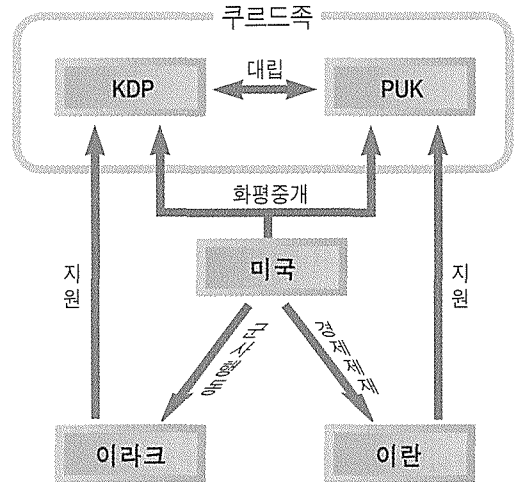
최근 10여년간 이란은 쿠르드애국연맹을 지원, 군사력 강화를 도왔다. 이번에 쿠르드민주당이 이라크정부와 손을 잡은 것은 이란의 지원으로 힘을 얻은 쿠르드애국연맹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라크군이 침공한 아르빌시는 쿠르드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의 수도」로서 쿠르드민주당은 그전부터 지배하에 두려고 노력했으며, 송유관에 가까운 아르빌시 주변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후세인정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적대관계인 쿠르드민주당과 후세인정권의 연합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관계국의 이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해온 쿠

르드 양당의 대립의 역사에서 볼 때 그렇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쿠르드족의 독립의 길은 계속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

이라크 쿠르드족과 관계국의 구조



용어해설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건립 · 공급

국민주택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60㎡ (18평) 이하 주택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라해도 국민주택이 아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전

용면적 60~85㎡ (25.7평)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더라도 국민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약저축자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택을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는 민영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서민용주택 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등이 민영주택보다 저렴하다.